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수입 건고추 검사제도 대폭 강화
농신보 특례보증 신설로 시설현대화 지원

거시경제 동향

2012년 4월 소비자동향지수
2012년 3월 국제수지(잠정)

기획 정보

미국 농가 정의의 대안적 접근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1년 상호금융조합 경영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 양 분 석 실

주요 농정 이슈_1

수입 건고추 검사제도 대폭 강화

※ 본 자료는 4월 24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수입 건고추 검사제도 대폭 강화」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불량농산물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대행 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와 협의하여 **수입농산물의 구매규격을 대폭 강화**토록 할 계획
 - 농산물의 수분함량은 부패·변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국내 유통 중 품질의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품위 규격 중 일정 수준 이하의 규격미달품은 반송**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
 - 이번에 문제가 된 수입 건고추에 대하여는 유통공사와 협의하여 **종전 수분 규격 20.0%를 18.0%이하로 강화**하고, **절편 압축진공포장 규격을 새로이 설정**하여 불량 수입산 고추가 국내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
- 수입농산물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본 검사량을 확대**하고 검역 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
 - 표본추출 컨테이너는 검역기관과 사전협의 선정하여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컨테이너별 **표본검사 시료를 기존 3포대에서 5포대로 확대** 추출
 - 시료채취 방법도 컨테이너 전·후 중간부위와 품위가 고르지 않을 경우 더미 내부에서까지 골고루 채취함으로써 검사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예정
 - 또한, 흙·먼지, 곰팡이 부패 등 검사과정에서 **검역 및 안전성 분야 의심 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농수산물검역검사본부 및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즉시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
- 수입농산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검사인력 보강 및 검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검사의 정밀도 향상을 위하여 **검사 장비를 확대 보급**할 예정
 - 착항검사지 사무소에는 검사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을 1인 이상 전진배

치하고, 품관원 지원별 인력풀(POOL)제를 운영하여 검사물량 집중 시
소요인력을 추가 지원토록 할 예정

- 조명확대경 등 휴대가 간편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검사장비와 상명천칭,
색채계 등 **정밀 검사장비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불량농산물의 수입 차단을 위해 필요 시는 **해외 선적지 검정지도·자문을
실시**하고, **민간검정업체의 검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

- 현재는 MMA 수입쌀에 대해서만 해외 선적지 검정지도·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영무역으로 수입되는 견고추 등 주요 품목의 선적지
(중국, 인도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검정원에 대한 지도·자문을
실시함으로써 불량농산물의 수입을 사전 차단**

- 유통공사 및 8개 민간검정업체 검정원·관계자 20여명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입농산물의 검정능력 향상 도모와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

○ 앞으로 수입농산물 검사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 등 자체 점검도 대폭
강화하여 검사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

- 검사지 관할 사무소장은 월 1회 이상, 본원 및 지원은 분기별 1회 이상
검사관련 규정 준수여부 점검을 의무

주요 농정 이슈_2

농신보 특례보증 신설로 시설현대화 지원

※ 본 자료는 4월 24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FTA 파고를 넘기 위한 농어업
시설현대화, 농신보 특례보증 신설로 지원」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업분야 **FTA 핵심 대책**으로서 **시설 현대화를 위한 '12년 이차보전
자금 신규 반영** [‘12년 2,125억 원 지원(예산 42억 원)]
- 시설현대화자금은 고액의 융자금 형태로 지원되므로 **취약한 담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에 의문**

□ 신설 내용

- ‘12년 신규로 도입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대상자가 농신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한정되는 내용임.
 - 동 사업자금의 지원 상한액을 감안하여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
 - ※ 현행: 개인 및 단체 10억 원, 법인 15억 원 → 개선: 30억 원, 50억 원
 - 동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신용조사 시 심사평점
가점(5점)을 부여
 - ※ 보증금액 결정 방법: (심사평점 / 80점) × 소요자금
- 2012년부터 농신보 보증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전액보증
한도**를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 2,000만 원 초과 시 부분보증 적용(농어업인·농어업법인 85%, 그 외 80%)

거시경제 동향_1

2012년 4월 소비자동향지수

※ 본 자료는 4월 2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4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중 104로 전월대비 3p 상승**

< 구성지수의 기여도 >

구 분	11.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3월	4월
소비자심리지수 ¹⁾	99	99	100	103	99	98	100	101	104
(전기 대비 지수차) ²⁾	△2.8	0.0	0.8	2.7	△3.4	△1.1	2.5	0.2	3.2
구 성									
현재생활형편	0.0	△0.5	0.5	0.2	△0.3	△0.3	0.5	△0.3	0.5
생활형편전망	△0.2	0.0	0.2	0.6	△0.7	△0.2	0.7	0.0	0.6
지수의									
가계수입전망	△0.5	0.3	0.0	0.5	△0.8	0.0	0.3	0.2	0.5
기여도									
소비지출전망	△0.7	0.4	0.0	0.2	△0.5	△0.2	0.5	0.0	0.5
(p)									
현재경기판단	△0.5	△0.3	0.1	0.6	△0.5	△0.2	0.2	0.1	0.5
향후경기전망	△0.9	0.1	0.0	0.6	△0.6	△0.2	0.3	0.2	0.6

주 : 1)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하여 산출

2) 전기와 지수 차이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 가계의 소비심리

- 현재생활형편CSI는 87로 전월대비 3p 상승하였으며 생활형편전망CSI도 97로 전월대비 3p 상승
- 가계수입전망CSI 및 소비지출전망CSI는 각각 99와 110으로 전월대비 2p씩 상승

<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

구 분	11.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3월(A)	4월(B)	(B-A)
현재생활형편CSI	86	83	86	87	85	83	86	84	87	(+3)
생활형편전망CSI	91	91	92	95	91	90	94	94	97	(+3)
가계수입전망CSI	95	96	96	98	95	95	96	97	99	(+2)
소비지출전망CSI	106	108	108	109	107	106	108	108	110	(+2)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경기판단CSI는 77로 전월대비 7p상승하였으며, 향후경기전망CSI는 90으로 전월대비 8p 상승
- 취업기회전망CSI는 92로 전월대비 2p상승
- 물가수준전망CSI 및 금리수준전망CSI는 각각 137과 115로 전월대비 4p, 1p 하락

< 경기, 취업기회,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CSI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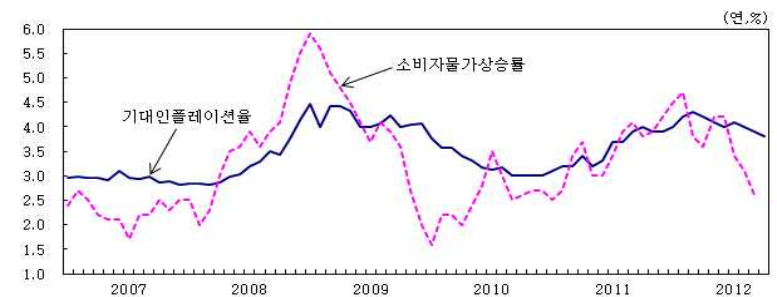
구 분	11.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3월(A)	4월(B)	(B-A)
현재경기판단CSI	68	64	66	75	68	65	68	70	77	(+7)
향후경기전망CSI	77	78	78	86	78	76	80	82	90	(+8)
취업기회전망CSI	88	96	90	91	82	83	88	90	92	(+2)
물가수준전망CSI	151	144	145	140	146	144	142	141	137	(△4)
금리수준전망CSI	128	126	123	119	118	117	115	116	115	(△1)

□ 기대인플레이션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8%로 전월대비 0.1%p 하락

- 구간별로는 향후 3.0~4.0%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 비중이 40.9%로 지난달에 비해 9.4%p 증가하였고, 4.0%을 초과하며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 비중은 41.1%로 11.5%p 감소

< 기대인플레이션을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거시경제 동향_2

2012년 3월 국제수지(잠정)

※ 본 자료는 4월 2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2012년 3월 중 경상수지는 30.4억 달러 흑자 기록

- **상품수지의 흑자규모**는 승용차, 석유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전월의 13.1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및 지적재산권사용료 등 기타서비스수지의 개선으로 전월의 12.2억 달러 적자에서 **7.0억 달러 흑자로 전환**
- **본원소득수지**는 12월 결산법인의 대외배당 지급이 늘어 전월의 6.1억 달러 흑자에서 **3.2억 달러 적자로 전환**
- **이전소득수지 적자규모**는 전월의 1.5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확대**

< 월별 경상수지 >

단위: 억 달러

구 분	2011p		2012p			
	3	1/4	1	2	3	1/4
경 상 수 지	13.3	26.1	-9.7	5.6	30.4	26.3
1. 상 품 수 지	27.5	58.4	-16.2	13.1	30.0	26.9
1.1 수출(FOB) ¹⁾	478.0	1,276.9	413.8	458.6	474.2	1,346.6
1.2 수입(FOB)	450.5	1,218.5	430.1	445.5	444.2	1,319.8
2. 서 비 스 수 지	-3.3	-25.4	-1.3	-12.2	7.0	-6.5
2.1 운 송	9.6	25.1	8.1	6.8	7.3	22.2
2.2 여 행	-5.6	-22.4	-8.1	-5.3	-3.0	-16.4
2.3 기 타 서 비 스	-7.2	-28.1	-1.3	-13.7	2.6	-12.4
(건 설 서 비 스)	9.1	25.7	14.7	13.6	14.9	43.2
(지 적 재 산 권 사 용 료)	-6.0	-10.9	0.2	-10.4	-2.9	-13.1
(사 업 서 비 스)	-10.6	-45.1	-17.4	-17.1	-11.7	-46.2
3. 본 원 소 득 수 지	-8.6	3.9	11.9	6.1	-3.2	14.8
3.1 급 료 및 임 금	-0.2	-1.2	-0.2	-0.4	-0.2	-0.8
3.2 투 자 소 득	-8.4	5.1	12.1	6.6	-3.0	15.7
(배 당 소 득)	-12.3	-11.5	5.1	0.3	-8.5	-3.1
(이 자 소 득)	4.0	16.6	7.0	6.3	5.5	18.8
4. 이 전 소 득 수 지	-2.4	-10.8	-4.1	-1.5	-3.4	-8.9
(송 금 이 전)	-1.8	-6.6	-1.1	-0.8	-0.5	-2.4

주: 국제수지통계의 새로운 “국제수지매뉴얼(BPM6)” 1단계 이행에 따른 건조진행 기준 선박수출 계상방식 적용 등으로 상품수지 상의 수출통계와 통관기준 수출통계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음.

○ 금융계정의 유출초 규모는 전월의 9.6억 달러에서 16.3억 달러로 확대 (1/4분기 중: 12.7억 달러 유출초)

- **직접투자의 유출초 규모**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순유입 전환으로 전월의 35.7억 달러에서 **16.2억 달러로 축소**
- **증권투자의 유입초 규모**는 외국인 증권투자의 둔화 및 해외증권투자 확대로 전월의 61.2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크게 축소**
- 파생금융상품의 유입초 규모는 전월의 2.1억 달러에서 9.2억 달러로 확대
- 기타투자의 유출초 규모는 전월의 15.3억 달러에서 4.9억 달러로 축소
- 준비자산은 17.4억 달러 증가

○ 자본수지는 1.0억 달러 유입초를 기록

< 월별 자본·금융계정 >

단위: 억 달러

구 분	2011p		2012p				
	3	1/4	1	2	3	1/4	
금 융 계 정 ¹⁾	5.5	-25.7	13.1	-9.6	-16.3	-12.7	
1. 직 접 투 자	-13.4	-47.0	-20.1	-35.7	-16.2	-72.0	
1.1 해외직접투자	-15.5	-56.2	-18.9	-21.2	-22.7	-62.9	
1.2 외국인직접투자	2.2	9.3	-1.2	-14.5	6.6	-9.2	
2. 증 권 투 자	7.2	-13.8	77.4	61.2	13.0	151.6	
2.1 증권투자[자산]	-6.9	-25.6	-21.0	-7.8	-22.7	-51.5	
2.2 증권투자[부채]	14.1	11.8	98.3	69.0	35.8	203.1	
지분증권	-7.4	-28.6	60.0	31.9	6.8	98.8	
부채증권	21.6	40.4	38.3	37.0	29.0	104.3	
3. 파 생 금 융 상 품	5.2	7.3	4.3	2.1	9.2	15.7	
4. 기 타 투 자	-6.5	62.5	-21.9	-15.3	-4.9	-42.1	
(무 역 신 용) ²⁾	-19.6	-7.4	13.0	-6.2	-8.6	-1.8	
(차 입)	86.2	137.8	-2.3	1.2	12.9	11.7	
(현금및예금) ²⁾	-56.2	-50.2	-6.7	-26.4	-6.4	-39.5	
5. 준 비 자 산	12.9	-34.8	-26.6	-21.9	-17.4	-65.9	
자 본 수 지	-0.3	-1.8	0.0	0.4	1.0	1.3	

주: 1) 순유출입액 기준으로 (+)는 유입초, (-)는 유출초(준비자산은 (-)는 증가, (+)는 감소)

2) 자산 및 부채의 순계기준

- 상품수지: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
- 서비스수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
- 본원소득수지: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임금, 배당, 이자 등 수입과 지급의 차이
- 이전소득수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를 나타내는 이전 수지는 대가가 따르지 않는 국제거래

※ 본 자료는 "Exploring Alternative Definitions—Implications for Agricultural Statistics and Program Eligibility, USDA, 2009"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우리나라의 농업조사관련 용어 정의>

○ 농가

-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2011년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농가인구

-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2011년 12월 1일 현재,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 전업 및 겸업농가

- 전업: 농업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와 농업 이외의 돈벌이 또는 영업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더라도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 겸업: 돈벌이를 위하여 농업 이외의 일 또는 영업에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 제1종 겸업: 전체로 보아 겸업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적은 겸업 농가
 - 제2종 겸업: 전체로 보아 겸업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많은 겸업 농가

□ 미국의 농가 정의와 특징

1. 농가 정의

- 미 연방정부는 1840년에 최초로 농업 총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농가 정의는 다양하게 변해 옴.
 - 1850년 농업 총조사: **연간 판매액 100달러 이상**인 농가
 - 1870년: **경지 면적 3에이커 이상, 연간 판매액 500달러 이상**인 농가
 - 1900년: 농가 구성원 중 최소 1명이 농사일에 투입한 총 시간 고려
 - 1925년: **경지 면적 3에이커 이상, 연간 판매액 250달러 이상**인 농가
 - 1975년: **농가당 연간 판매액이 1,000달러 이상**인 농가
- 현재 미국 농무부는 1975년에 설정된 농가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Point Farms"의 정의를 도입**하여 농가 통계의 지표로 활용함.
 - "Point Farms": **Ponit가 1,000인 농가**를 의미(농가 판매액 1달러 당 1point 적용)

2. 주요 특징

- (**농가 비중**)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5만 달러 미만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76.1% 차지**(158만 호)하는 반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25만 달러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8.2% 차지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0달러 미만인 농가(Point Farms)**는 미국 전체 농가의 **약 21.4% 차지**(44만 호)
- (**판매액 비중**)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5만 달러 미만인 농가의 총 판매액은 전체 판매액의 5.5%를 차지하며,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25만 달러인 농가의 총 판매액은 전체 판매액의 76.9% 차지**
- (**농업 경영주의 직업 및 노동 시간**) 농가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높을수록 주요 직업이 농업인 농가가 많고**, 노동 투입시간도 농가의 연간 판매액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가 판매액이 5만 달러 미만인 농가의 농가당 평균 농외소득**(5만 5천 달러)은 농가 판매액이 **50만 달러 이상인 농가**의 농가당 평균 **농외소득(2만 9천 달러)보다 1.9배 높음.**

○ (가족농) 미국 전체 농가의 97.1%가 가족농이며, 가족농 형태는 농가의 농산물 판매액과 무관함(ERS 기준).

< 농산물 판매액 기준에 의한 미국 농가의 주요 특징(2006년 기준) >

단위: 달러, 천 호, 에이커, %

구 분	1,000 미만	1,000~999	10,000~49,999	50,000~99,999	100,000~174,999	175,000~249,999	250,000~499,999	500,000 이상	전체
농가수	445	754	385	164	105	60	90	81	2,084
농 가	21.4	36.2	18.5	7.9	5.0	2.9	4.3	3.9	100.0
총 판매액	0.0	1.5	4.1	5.3	6.4	5.7	14.4	62.5	100.0
생산비	2.8	4.7	6.3	6.3	7.0	6.1	14.5	52.1	100.0
재배면적	3.6	9.6	14.6	12.7	11.3	7.9	16.0	24.4	100.0
정부 보조금	0.2	6.6	11.4	9.8	10.0	8.6	20.5	32.9	100.0
농업이 주요 직업인 경우	19.8	29.0	48.8	69.9	79.4	90.7	91.5	96.0	43.5
노동력 투입 (2,000h 이상)	8.4	7.7	27.8	51.4	69.7	81.8	82.4	87.7	26.6
가족 농	98.7	98.1	97.3	95.3	94.1	93.6	95.5	88.8	97.1

주: 본 자료는 "USDA, 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2006."의 자료를 재인용함.

3. 연영 농가 정의에서의 문제점

- 농가 정의는 개별 농가의 재배면적, 생산량, 재고량, 판매액, 경영비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데, **현재 미국의 농가 정의**는 농업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농가들을 포괄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음.
- 현재의 농가 정의는 영농형태별(축산·경종), 부류별(곡물, 채소, 과일 등), 품목별로 **농가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농가 간 영농 규모도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실질적으로 농업생산과 연관이 매우 적은 농가인데도 불구하고, 농가의 정의에는 반영되어 **농가의 이질적인 특성이 존재**함.

- 농가 정의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을 경우, 자료의 대표성 및 공신력이 떨어져 **분석결과 해석 상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높음.** 특히,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정확한 정책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정책의 효과도 크게 반감**됨.

□ 농업지원 관련 농가 정의의 적합성 검토

- 농가 정의는 각종 농업 정책과 통계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
- **미국 농가의 다양성**으로 인해 **농업 통계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함. 통계의 정확성과 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복잡·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는 **농가 정의를 보다 세밀히 분석**하고, **농가의 이질성에 대해 재진단**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 농무부는 연방정부의 농업보조금에 대해 **농가 지원의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자 **"활동적인 참여(actively engaged)"**란 정의를 도입함.
 - 이는 농업인(또는 농가)이 자본, 토지, 노동력, 장비 등의 생산요소를 **농업활동에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임.
 - ※ **"활동적인 참여"(actively engaged)의 정의**는 최초 「식량안보법제 1001A항」(1985년)에 입안되었고, 현재 관련 조항은 **「농업법 2008」에 명시**되어 있음.
 - 이 법안의 목적은 연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정확한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데 있음.
- 농가의 보다 정확한 "활동적인 참여(actively engaged)"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농가 판매액,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 농외소득**을 적용함.
- (**농가 판매액**) 일반적으로 농산물 판매액 규모가 큰 농가는 적은 농가 보다 상대적으로 농업생산에 활동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기준) 농가 판매액이 1만 달러 이상, 5만 달러 이상

- (현황)

구 분	1만 달러 이상	5만 달러 이상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42.7	24.0
연간 1,500시간 노동 투입 농가 비중	73.0	51.0
정부 지원 수혜 비중	93.0	82.0

- (문제점) 농업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판매액이 적은 소 규모 농가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음.**

· 전체 농가 중의 7%(약 3만 1천 호)의 농산물 가치는 1,000~10,000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약 1,645호의 농산물 가치는 10,000달러를 상회함.

※ 농가 유형: 정식 시점과 수확 시점간의 시차가 큰 과수 농가, 기상 이변, 가축 질병으로 큰 손실을 입은 농가 등

○ **(농업소득의 비중)** 농가의 “활동적인 참여(actively engaged)”를 측정하기 위한 주요 지표이며, 연방세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가 가능함.

- (기준) 농업소득 비중이 전체 농가소득의 50% 이상

- (현황)

구 분	농업소득 비중 50% 이상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12.0
연간 1,500시간 노동 투입 농가 비중	25.0
정부 지원 수혜 비중	41.0

- (문제점) **예상치 못한 운영비 상승**, 재고량 증가에 따른 **저장비용** 증가, 주요 시설·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농업소득의 감소 또는 소득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미국 전체 농업 생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규모 농가가 정부 보조금 수혜 대상자에 누락될 가능성이 높음.**

※ 2006년, 판매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인 농가의 20%가 손실로 인해 “활동적인 참여(actively engaged)” 농가 대상에서 제외됨.

→ 상기 기준을 적용할 경우, 판매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인 농가의 약 35%, 판매규모가 17만 5천~50만 달러인 농가의 50%가 정부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농외소득)** 전체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이 높은 농가를 정부보조금의 수혜농가에서 제외

- (기준) 농외소득이 10만 달러 이상, 5만 달러 이상

※ 「농업법 2008」에서는 농외소득 기준을 50만 달러 이상으로 설정

- (현황) 제외 농가 비중

구 분	농외소득 10만 달러 이상	농외소득 5만 달러 이상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18	52
연간 1,500시간 노동 투입 농가 비중	12	40
정부 지원 수혜 비중	12	30

- (문제점) **농외소득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대부분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4월 23일~27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아닌 ‘강화’

- 정부,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 대신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표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검역 강화 시행. “정확한 상황 파악 위해 미국에서 보내온 자료 검토 후 전염성 광우병의 개연성이 보이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현재 광우병이 발견된 미국 젓소의 경우 30개월 이상인 만큼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낮고, 한·미간에는 수입중단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 한편,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은 2008년 미산 쇠고기 검역조건 완화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병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언급

자료: 농축유통신문(2012.4.25).

미국 측에 상세 정보 제공 요청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전면 강화하기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미국 농업부에서 '12.4.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 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젓소 1두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국측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청하였다고 밝힘.
- 금번 미국에서 확인된 BSE 발생과 관련, 미국 측에서 제공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 이로 인한 통상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라고 설명
 - ※ 미국측에 발생 축의 월령, 발견 장소, 동거축 파악 등 자료 요청
- 아울러, 30개월령 이상 된 젓소고기는 미국에서는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으며,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
 - ※ 금번 발생한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 다르며, 주로 나이든 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
- 또한, 이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우선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검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함.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작업장별, 일자별로 구분하여 개봉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음.

※ 자료출처: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 보도자료(2012.4.25)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수입, 크게 늘었다

- 올해 들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입이 구제역 이전과 비교해 모두 증가하여 수입육의 국내 소비시장 공략 강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상순까지 쇠고기는 검역기준으로 6만8,600톤, 돼지고기 10만4,469톤, 닭고기 3만4,708톤 수입되어 구제역 이전인 2009년과 비교해 모두 증가. 2009년에는 4월 말 기준 쇠고기 6만6,166톤, 돼지고기 7만7,337톤, 닭고기 1만2,500톤이 수입된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 쇠고기 4%, 돼지고기 35%, 닭고기 3배 이상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10년과 단순 비교해서도 육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30~70% 가량 수입 증가. 수입육의 시장잠식 및 비중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자료: 농수축산신문(2012.4.24).

□ 4.22일 대형마트 첫 강제휴업...농산물 산지 발주량 줄어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4.22일 일요일 첫 강제 휴업일 맞아 대형마트에 납품물량이 줄어 농산물을 출하해야 하는 산지 입장에서는 고심. 또한 판로가 막힌 농산물의 재고처리는 현실적으로 도매시장 등으로 출하하는 방법밖에 없어 홍수 출하로 전체 농산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과 함께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목적과 달리 전통 시장엔 기대 효과 없고, 대형마트는 전체 매출량 피해를 다소 줄이기 위해 강제휴무 전날 사전 쇼핑 홍보로 고객 유치

자료: 농민신문(2012.4.25).

□ 한·중 FTA ‘2단계 협상’ 합의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1단계...농산물과 같은 민감품목의 보호방안을 마련한 뒤 2단계...이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 협상방식과 관련, 양측은 농산물이 포함된 상품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 민감품목

이나 초민감품목은 개방에서 제외 혹은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 양측은 1단계 협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가지 않기로 하고, 2단계 협상은 '하나라도 타결되지 않으면 전체가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일괄 타결 방식. 정부가 '한·중 FTA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함에 따라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공식·비공식 국내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5월 중순 공동성명문 발표

자료: 농민신문(2012.4.27).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국' 연내 설립 추진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2011.12.29)이 2012.12.1 시행되는 데 대비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협동조합국'을 올해 안 신설. 이 법이 시행되면 업종·분야에 상관없이 최소 5명 이상만 모이면 신용사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 3월 말 '협동조합기획단' 구성돼 운영 중.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되면 임시조직인 기획단은 협동조합정책국(가칭)으로 전환해 정식 직제에 편입될 전망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실태조사, 협동조합 설립 인가 같은 업무 담당

자료: 농민신문(2012.4.23).

연구 지원 정보

2011년 상호금융조합 경영현황

※ 본 자료는 3월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11년 상호금융조합 경영현황」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경영연황

- (총자산) '11년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329.4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8.9조원 증가(6.1% ↑)하였음.

* 상호금융조합 총자산 증가율: ('09년)11.8% → ('10년)10.4% → ('11년)6.1%

- 수신증가세* 둔화, 과도한 외형성장 억제 지도 등으로 자산성장세가 크게 둔화

* 상호금융조합 수신 증가율: ('09년)15.8% → ('10년)11.6% → ('11년)6.1%

- 농협이 257.6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5.8조 원(6.5% ↑) 증가하였으며, 신협 및 수협 역시 각각 1.8조 원(3.8% ↑), 1.2조 원(7.3% ↑) 증가

< 총자산 현황 >

단위: 조 원, %

구 분	'10년 말	'11년 말	증감(률)	
신 협	47.8	49.6	1.8	(3.8)
농 협	241.8	257.6	15.8	(6.5)
수 협	16.5	17.7	1.2	(7.3)
산 립	4.4	4.5	0.1	(2.5)
합 계	310.5	329.4	18.9	(6.1)

- (당기순이익) '11년 중 상호금융조합의 당기순이익은 1조9,488억 원으로 전년동기(1조9,896억 원) 대비 408억 원 감소(2.0% ↓)

- 이는 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이자이익 감소 및 판매관리비 증가 등에 기인

- 농협의 당기순이익이 소폭 증가(+272억 원, 1.8% ↑)하였으나, 신협·수협·산림조합은 실적이 소폭 악화

< 당기순이익 현황 >

단위: 억 원, %

구 분	신 협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합 계
'10년 중	3,373	14,983	1,078	462	19,896
'11년 중	2,920	15,255	1,026	287	19,488
증감(률)	△453 (△13.4)	272 (1.8)	△52 (△4.8)	△175 (△37.8)	△408 (△2.0)

- **(자본적정성)** '11년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은 7.41%**로 전년 말의 7.03% 대비 **0.38%p 상승**
 - 순이익 시현에 따른 자본증가,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 추세
 - * 신협(3.42%→8.80%), 농협(7.98%→8.34%), 수협(2.37%→2.74%), 산림(11.29%→11.89%)
- **(건전성)** '11년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은 3.57%**로 전년 말 대비 개선(0.23%p↓)되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20%도 개선**(0.11%p↓)

< 건전성 관련 비율 현황 >

단위: %, %p

구 분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10년 말	'11년 말	증감	'10년 말	'11년 말	증감
신 협	6.48	6.01	△0.47	3.66	3.61	△0.05
농 협	3.13	2.99	△0.14	1.97	1.85	△0.12
수 협	5.57	4.62	△0.95	3.33	3.09	△0.25
산 립	6.27	5.64	△0.63	3.16	3.12	△0.04
전 체	3.80	3.57	△0.23	2.31	2.20	△0.11

□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예탁금 비과세한도가 확대('09.1월, 2천만 원→8천만 원)되면서 **'09~'10년 중** 상호금융조합의 **수신과 총자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11년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
 - 자산급증 조합에 대한 과도한 외형성장 억제 지도 및 중점 상시감시('11.2월), 자산증가에 대응한 리스크관리 종합대책 마련('11.6월) 등 감독조치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

- 다만, **'11년 하반기**에 은행권 대출억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에 기인하여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증가**

* 총대출 증가율: ('09년)5.3% → ('10년)6.3% → ('11년)8.2%(상반기 2.7%, 하반기 5.5%)

- 이에 대응하여 신규대출 심사 강화, 예금 등 대출재원의 증가속도 조절 등을 **지도('11.11월)**하고 대출급증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11.12월~'12.2월)하였으며,
- 대출 증감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발표된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의 **상호금융부문 보완방안을 추진**하는 등 **감독을 강화 중**
- 향후에도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억제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경기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손실흡수 능력 제고와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

- 지속적인 순이익 시현,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등에 기인하여 상호금융조합의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은 **개선 추세**

* 순이익: ('07년)1조4,212억 원 → ('08년)1조2,754억 원 → ('09년)1조5,602억 원 → ('10년)1조9,896억 원 → ('11년)1조9,488억 원

** 연체율: ('07년)4.0% → ('08년)3.8% → ('09년)3.8% → ('10년)3.8% → ('11년)3.6%

-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를 실시하여 **이상징후 발견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
- '13.7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강화될 예정('12.2월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

* 건전성분류예) - 정상 (현행3개월 미만 연체 →('13.7월)2개월 미만 연체 →('14.7월)1개월 미만 연체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예) - 정상 (현행 0.5% →('13.7월) 0.65% →('14.7월) 0.8% →('15.7월) 1.0%

- 건전성기준 강화에 따른 충격 완화 및 강화된 기준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각 중앙회와 조합들이 개정기준 시행 전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지도할 예정**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